

공 지 사 항

I. 도서관·박물관·미술관시설에 전용부담금 면제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설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을 면제토록 하였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 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과하는 토지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담금이나, '92. 2. 7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농지를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부담금은 전액 면제하는 예외사항으로 하였으며, 아울러, 같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림법 시행령”에서는 산림을 전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산림전용부담금도 같이 면제토록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농지나 산지에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건립할 때에는 부담이 한층 가벼워져 민간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설립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II. 교육용전력 요금적용 시행기준

1. 적용대상

- 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속병원 제외)
- 나.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 다. 국립박물관,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

2. 적용기준

관련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수용장소가 다른 용도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시설

3. 적용범위

- 가. 학교

(1) 적용법률 : 교육법

(2) 대상 : 교육법에 교육기관으로 규정한 다음의 학교

- 국민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 포함)·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 및 대학(단과·종합대학 및 대학원 포함).
- 교육대학·사범대학
-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 특수학교
- 유치원
- 각종 학교(예술학교, 신학교 등이 해당).

* 적용 제외 : 학원의 설립·운영이 관한 법률이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된 각종 학원

나. 도서관

(1) 도서관의 정의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하므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

(2) 적용법률 : 도서관 진흥법

(3) 대상 :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의 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 공공도서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시설로서 문화부장관(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도서관
- 대학도서관
 -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 설치된 도서관

- 학교도서관
국·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설치된 도서관
-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시설로서 문화부장관(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도서관

* 적용제외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된 독서실

다. 박물관

(1) 박물관의 정의

인류, 역사, 考古, 민속, 예술, 자연과학,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일반공중의 사회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적용법률 : 박물관법

(3) 대상

-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
- 박물관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준박물관으로 지정 (92. 6. 1이후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된 다음의 시설
 - 박물관
 - 미술관
 - 동물원
 - 식물원
 - 수족관
 - 기념관
 - 향토자료관 등

4. 시 행

가. 적용방법

(1) 증빙서 첨부한 계약종별 변경신청

1의 관련법에 의한 증빙서(등록증, 인·허가증 등) 사본제출

다만, 등록 또는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기관장명의의 공문으로 가능

(2) 적용기준

(가) 기설수용가

계약종별 변경신청접수일부터 적용
다만, 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계약전력 4 Kw이상 수용가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소장 판단으로 임의종별 처리가능

(예 : 서울대학교, 경북중, 고등학교)

(1992. 2. 1이전 접수수용가는 1992. 2. 1부터 적용)

(나) 신설수용가

1992. 2. 1이후 신설일부부터 적용

III. 도서관용 전력 요금적용 시행기준

1. 적용법률 : 도서관진흥법

2. 적용대상 :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한 다음의 도서관

가. 국립중앙도서관

나. 공공도서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시설로서 문화부장관에게 등록한 도서관

다. 대학도서관

-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 설치된 도서관

라. 학교도서관

- 국·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설치된 도서관

마.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 법인, 단체 개인이 설립한 시설로서 문화부장관에게 등록한 도서관

3. 요금적용 신청방법

- 적용대상 도서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

빙서(공문, 등록증 등)사본을 첨부하여 소재지 한국전력공사 관할 사업소에 계약종별 변경신청

4. 요금 적용시기

계약종별 변경신청 접수일로부터 적용

* 전력요금 비교표(교압전력 A : 3,300V-66,000V 기준)

('92. 2. 1시행) (단위 : 원)

| 현 | | 행 | 개 | | 정 | 인상률(%) |
|-----|-------|-------|-----|-------|-------|------------|
| 구분 | | 요금 | 구분 | | 요금 | |
| 업무용 | 기본요금 | 4,045 | 일반용 | 기본요금 | 4,370 | 8 |
| | 여름철 | 72.80 | | 여름철 | 76.80 | 5 |
| | 그밖의 철 | 48.50 | | 그밖의 철 | 51.20 | 6 |
| | | | 교육용 | 기본요금 | 4,045 | 상기 인상에서 제외 |
| | | | | 여름철 | 72.80 | |
| | | | | 그밖의 철 | 48.50 | |

주) 도서관용 요금적용 시행기준은 "교육용 전력 요금적용 시행기준"중에서 도서관에 해당하는 사항만 발췌한 내용임.

■ 신간 안내 ■

세계를 보고 우리를 본다(上·下)

박태길 著 · 上卷 · 크라운版 · 348쪽 · 5,000원
 · 下卷 · 크라운版 · 313쪽 · 5,000원

이책은 세계 지배를 시도한 강국들의 세계전략을 시대순으로 로마로부터 이슬람, 몽고, 중국, 합스부르크, 프랑스, 영국, 독일, 소련, 미국, 일본, 이스라엘까지 전개하였으며, 나라별로 그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 국민성과 지도자, 세계 지배전략을 고찰하는 한편 우리의 국민성 개조문제를 다루었다.

大永文化社
 서울·용산구 청파구 1가 178-2
 TEL 716-3883, 714-3062